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해당 과태료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제정 1991.07.10. 조례 제15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부서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1층 민원여권과, 전화 :

330-1409, FAX : 330-1680, E-mail : onward84@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